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123호
2019년7월3일(수)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
- 1. 균형있는
- 1. 사람중심
- 1. 품격있는
- 1. 살기좋은
- 감상나눔문화정
- 동생높은문화정
- 경복지관광
- 제지관광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1650호 여수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3
- 여수시 공고 제2019-1653호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
- 여수시 여서동 공고 제2019-31호 여서동 5통장 모집 공고 /16

회 관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여수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취지

「여수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전부 포함한 「여수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019. 6. 28. 공포됨에 따라 동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폐지(2015.1.15. 규칙 제613호)
 - 제1조(목적), 제2조(공인보관자지정), 제3조(공인의 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제5조(공인날인 기록)

3. 시행규칙폐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19. 7. 3. ~ 7. 23.(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 총무과
- 팩 스 : 061-659-5807
- 이메일(E-Mail) : ask30110@korea.kr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전화 061-659-3130, 팩스 061-659-5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폐지규칙명 : 여수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폐지

여수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5. 14.시행) 일부 개정사항을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에 반영 하고자 함
- 기존 중복된 요건 등을 통합·간소화하여 자체감사에 있어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종전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으로 면책받기 위한 요건 중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요건 개정 (규칙 제5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개정 사항(2019. 5. 14.시행)을 반영하여 우리 시 규칙 개정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개정 내용(요약)

현 행	개 정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성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 하였을 것 (단,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 완화 적용 가능) 	<p>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p> <p>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p>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나. 별지 개정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개정 사항과 관련한 별지 개정
 - 별지 제1호 서식 : 면책심사신청 안내
 - 별지 제2호 서식 : 면책심사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 면책심사조서

3. 개정안 : 별 첨

4. 입법 예고기간 : 2019. 7. 3. ~ 2019. 7. 24(21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감사담당관)
 - 전 화 : 061)659-3067, 팩스 : 061)659-5804
 - 이메일(E-Mail) : kdc0316@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면책심사신청 안내

여수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부서)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 청 내 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한다.</p> <p>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p> <p>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p> <p>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 하였을 것. 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p>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p> <p>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p> <p>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p> <p>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 <p>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p> <p>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p>

통장 모집 공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이·통장의 임명)에 의거 관할 구역의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1명(여서동 5통장)

- 관할구역 : 여서동 부영아파트 508동

2. 신청기간 : 2019. 7. 3.(수)~ 7. 15.(월) / 12일간

3. 자격요건

- 모집 공고일 기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
-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입주자 회의 등에서 선출된 사람이거나 해당 통에 거주하는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한 사람
-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4. 통장의 임무

-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보고, 풍수해복구 및 제설작업 등 지원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적격자 》 : 위촉 제외 대상자

-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임 기 :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초본,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주민추천서

7. 접수 및 문의 : 여서동 주민센터(☎ 659-1475, 담당자 이유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9. 7. 3.

여 서 동 장